

대전지방법원

제 4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2나117383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단230394 판결
환송전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10356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1.
판결선고	2024. 2.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73,242,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등록번호 : E, 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7. 19. 설립된 태양에너지 기자재 이용 광고물 및 철구조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11. 11.경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C로 변경하였고,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400,000주(액면금 1주당 1,000원), 자본금액은 400,000,000원이었다.

나. 원고와 C는 2013. 11. 28. 'C에서 원고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영업하여 계약한 건에 대하여 공사금액 입금 후 7일 이내 약정한 4%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6. C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6351호), 위 법원에서 2016. 8.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6,447,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C와 D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6나108180호), 이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다269500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관련 사건의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9. 8.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 9. 20.경 상호를 C 주식회사(등록번호 : F)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1,000주(액면금 1주당 1,000원), 자본금액 1,000,000원이었다가 2017. 9. 18.경 총 발행주식수는 400,000주(액면금 1주당

1,000원), 자본금액은 400,000,000원이 되었다.

마. C의 주주는 Y(132,000주, 33%), G(128,000주, 32%), Z(100,000주, 25%), AA(40,000주, 10%)이고, 피고의 주주는 G(400,000주,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6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가 C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C의 약정금 지급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3002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은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의 변경 전 상호가 C 주식회사였던 사실, 피고와 C는 주요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대전 중구AB빌딩 AC호인데, C는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충청본부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C는 2021. 12. 1. 해산 간주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각 든 증거, 갑 제4, 14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 역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000원이었고, 2017. 3. 14. 150,000,000원으로, 2017. 9. 12. 400,000,000원으로 각 증자되었는데 위 자본금의 조달 과정에 C가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② C는 피고가 2015. 9. 8. 설립된 지 약 6년이 지난 2021. 12. 21.에 비로소 해산 간주되었고, 피고가 설립된 후에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까지 역삼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상당한 기간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온 점, ③ 나아가 피고와 C의 주주 구성이 다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의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21. 12. 1.까지의 임원 내역은 AD, Z, G, AA, AE, M, D, Y이며,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임원 내역은 AF, AG, AH, AI, G로, 피고와 C의 주주와 임원 구성에 비추어 이를 인적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2017. 9. 8. 충남 금산군 H, I, J, K 토지를 각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C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발생일 전후 경영상태나 자산상황의 변화, C와 피고의 영업용자산 또는 자금 사용이 혼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그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원고의 채무자인 C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재판장) 윤현정 임수정